

안산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861 |
|----------|-----|

제출년월일 : 2000. 3.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 정 이 유

- IMF 경제체제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량실업의 조속한 완화를 목적으로 시청내에 설치한 안산시 취업정보센터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알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주 요 골 자

- 가. 센터는 고용안정시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센터는 구인개척, 국내 취업알선, 실업대책 상담 및 안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센터에 4명이하의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센터의 민간직업상담원은 시장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근로기간 만료전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센터의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을 별표에 정하고 보수와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직업상담원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재정 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 발해서 : 별첨

- 직업안정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 4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조의 2
- 직업 소개등 업무처리규정 제5조
- 직업상담원의 규정(노동부장관훈령)

예산 수반사항

- 연간 예산액 : 61,710천원

입법 예고 : 의견 없음.

- 기간 : 2000. 2. 3 ~ 2. 22(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시·군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표준안

안산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과 실업 대책을 위한 종합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산시취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센터는 고용안정시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 (업무 등) ①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구인개척
2. 구인·구직신청의 수리
3. 구인·구직자에 대한 국내직업소개·직업지도 및 직업정보의 제공
4. 기타 실업대책에 대한 상담 및 안내

②센터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의 반대급부를 징수할 수 없다.

제4조 (상담원의 배치) 센터에는 4명이하의 민간직업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5조 (상담원의 채용등) ①상담원은 공개모집하여 채용하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1년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시장은 상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
2. 업무상 또는 업무 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본인의 사직의사가 있을 때

제6조 (상담원의 자격기준등) ①상담원의 자격은 별표와 같다.

②상담원의 보수와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직업상담원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상담원의 자격(제6조제1항관련)

상담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교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업안정법에 의한 구인·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정보의 제공업무에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직업상담사 또는 직업상담훈련과정수료증 소지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4.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또는 실업대책 상담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